

##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

| 번호 | 서 류 명   | 비고                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1  | ○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(붙임1)  | 반드시 제출             |
| 2  | ○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(붙임2)   | 반드시 제출             |
| 3  | ○ 상품설명서(붙임3)  | 반드시 제출             |
| 4  | < 삭 제 >   |                    |
| 5  | ○ 벤처기업확인서, 창업기업확인서, 사회적기업인증서,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, 마을기업지정서, 자활기업인증서,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  | 나라장터 기업정보 미연계 시 제출 |
| 6  | < 삭 제 >   |                    |
| 7  | ○ 기술 증빙자료<br>- 특허,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| 기술 증빙자료 있는 경우 제출   |
| 8  | ○ 품질 증빙자료<br>- 품질 인증서 사본,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,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<br>- 인증서,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<br>*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, 공인시험성적서로 제출 | 반드시 제출             |
| 9  | ○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, 안전 인증, 전자파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 | 해당하는 경우 제출         |
| 10 | ○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약약서 (붙임4)   | 반드시 제출             |
| 11 | ○ 가격자료 총괄표 (별지4)  | 반드시 제출             |

<주>

1. 제출 서류는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(발급)받은 것에 한하며,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.(단,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)
2. 국민안전 관련 물자 세부품명: 체육시설탄성포장재,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, 미끄럼방지포장재, 도막형바닥재, 철제가드레일, 철제도로중앙분리대, 철제교량난간,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, 알루미늄제교량난간, 낙석방지책, 차선분리대, 흙콘크리트,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,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

##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

당사는 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」에 의하여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에 대한 자료(증빙자료포함)를 작성·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.
2. 적용기술과 동등이상으로 규격작성 되었음을 확약합니다.
3. 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이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벤처나라 제품에 적용된 기술, 권리,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4.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거래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.

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」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·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서약자(업체명) :

대 표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조달청장 귀하



[별표2 (제7조의2 제2항) 붙임3]

## 상 품 설 명 서

- 1) 동일한 상품의 서로 다른 규격(또는 모델)을 신청하고자 하실 때는 상품설명서는 하나로 작성해주시고,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 모델(규격) 목록란에 모두 기재  
(예시. 컴퓨터 / 상세모델 수 : 5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하나에 상세 모델은 목록란에 기재)
- 2) 2개 이상의 상품(상품 종류가 다른 경우)를 신청하실 때는 상품설명서 2개 상품별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(규격) 목록란에 모두 기재  
(예시. 컴퓨터 / 상세모델 수 : 5종, 프린터 / 상세모델 수 : 2종, 키보드 / 상세모델 수 : 3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3부 각 상품별 상세모델은 목록란에 기재)

|   |  |
|---|--|
| 상품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상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상품을 간략히 소개(1/4쪽 이상) |  |
| 상품 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신청 상품의 형태,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    |  |

상품의 특징

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,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(1/3쪽 이상)

- ①
- ②
- ③

상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

신청 상품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,  
그 기술이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지,  
그 기술이 신청 상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,  
그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,  
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,  
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 
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성능 면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 
(2/3쪽 이상)

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·성능

사용자 편의성, 안정성, 효율성, 신뢰성, 내구성, 에너지 절약성, 보안성, 환경친화성 등 품질·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(2/3쪽 이상)

신청 모델(규격) 목록

신청 상품과 관련된 모델(규격)이 1종인 경우라도 신청 모델(규격)목록 제출

※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

<예시>

| 번호 | 모델명 | 크기  | 재질  | 용량  | 비고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|
| 1  | A   | 10  | 재질1 | 용량1 |    |
| 2  | B   | 50  | 재질1 | 용량1 |    |
| 3  | C   | 70  | 재질2 | 용량1 |    |
| 4  | D   | 100 | 재질2 | 용량2 |    |

전회(前回) 차 심사와 대비되는 실질적 기술·품질 개선 사항

전회 차 심사 때 기술한 품질, 성능 이외에 실질적인 제품 개선이 있는 경우,  
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(1/2쪽 정도)

실질적 제품 개선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'기준과 동일'로 작성하여 제출

| 항목 | 기존 신청 내용 | 보완 내용 |
|----|----------|-------|
| ①  |          |       |
| ②  |          |       |
| ③  |          |       |
| ④  |          |       |
| ⑤  |          |       |

##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약약서

당 사에서는 벤처나라에 지정·등록하려는 제품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, 동 자격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것과 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관리 규정」에 따라 품질인증\*을 받은 제품을 납품할 것을 약약합니다.

- \* 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관리 규정」제21조 제6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없을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동 규정「별지 제3호 서식」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제출
- \*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의 경우,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제출

또한 본 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·제출하며,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관리 규정」 및 「조달청 벤처·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 약관」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약약합니다.

붙임. 법정 및 품질 의무인증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

20 년 월 일

서약자(회사명) :

대 표 : (인)

조달청장 귀하

## <붙임>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회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| 회사명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<br>등록번호       |                |
| 신청제품명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세부품명                        | (신청제품으로 부여받은 세부품명이 있는 경우 기재, 없는 경우 공란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물품식별번호                      | (신청제품으로 부여받은 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모두 기재, 없는 경우 공란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법정의무<br>인증명                 | 해당됨 (인증명 : 000인증) / 해당 없음<br>(신청제품을 판매 할 때 필요한 법정의무인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“해당 없음” 기재하고 근거자료 및 아래 인증자료 목록에 품질증빙자료를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및 제출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법정의무<br>및<br>품질<br>인증<br>자료 | 연번  |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효기간              | 관련 법령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| 법정의무인증 예시) KC인증<br>(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) | 만료기간없음            | [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| 품질인증자료 예시) K마크                     | 19.5.28 ~ 24.5.27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| 품질관리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
- 1) 신청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경우\*에는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 (미제출시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불가)  
 ※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 업체에 있음  
 ※ (참고) 법정의무 인증 필요여부 확인법 :  
 - 인증(시험)기관, 관련 부처, 인증표준정보센터,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확인
- 2) 법정의무인증이 해당되지 않는 제품에 한하여 품질인증, 시험성적서 등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법정의무인증명: “해당 없음”, 법정의무 및 품질인증자료: “품질관리계획서”라 기재하여 품질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
- 3) 기재한 인증자료는 품질증빙자료(품질 관련 증빙자료 및 기타 첨부파일) 첨부 란에 별도 첨부

-----

주) 법정의무인증 :

- 관계법령에 따라 제품을 제조·유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, '전파법'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 (EMC), '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'에 의한 안전인증, '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'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, 형식승인,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, 인증서 등